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국제 대학원생 트랜스-동아시아연구회'라 한다. 일본어 이름은 '国際大学院生トランス-東アジア研究会'라 하고 영문표기는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raduate Students on Trans-East Asian Studies(TEAS)'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트랜스 동아시아 연구 전반의 학문적 발전과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국제 대학원생 사이의 학술 및 친목 도모를 위한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2. 국제적 학술 교류
3. 회원의 친목활동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항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국내외 교육기관의 전문직에 재직중인 자.

- (2) 대학원에서 동아시아 관련 학문을 전공하였거나 과정을 이수 중인 자.
- (3) 상기 1,2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인정되어 상임이사회의에서 추천 결의된 개인 또는 기관

3 평생회원

평생회비를 납부한 개인 회원 또는 기관 회원

4 고문

- (1) 본회의 전직 회장 및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자.
- (2)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

5 네트워크 회원

트랜스 동아시아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여 본회와의 정보 교류 및 연구 협력에 동의한 아래 단체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으로 영입한다.

- (1) 동아시아 관련 단체로서 국내외에서 공인된 학회 또는 협회
- (2) 동아시아 관련 전문 기관 및 기업체
- (3) 기타 동아시아 관련 각종 단체
- (4) 네트워크 회원은 호혜 원칙에 의하여 상호 회비 납부는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서 발행되는 정기적인 간행물과 실적물 및 각종 행사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 (5) 네트워크 회원 단체에 가입된 개별 회원은 본회의 학술회의에 발표 또는 참가할 수 있으나, 논문 게재를 원할 경우에는 입회 절차를 거쳐 가능하다.

제6조(회비) 정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상실) 정회원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한다.

- (1) 특별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휴회원으로 간주하고, 휴회원은 3년간의 체납 회비를 납부함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 (2)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 (3) 제명된 회원의 본회에서 취득된 포상은 제명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3장 기구 및 산하학회

제8조(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2) 이사회는 이사 00인 이상의 동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 (3)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단 출석 위임에 대해서는 회의 정족수로는 인정하되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4) 이사회는 회장을 선출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

- (1)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내외로 한다.
- (2) 위원장은 현 회장이 맡고, 간사는 사무국장이 한다. 그 외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 (3)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 (4) 기타 세부적인 운영은 자체 운영 규정에 의한다.

제4장 임원

제10조(조직) 본회에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1명
- 3 상임이사 약간명
- 4 감사 약간명

제11조(선출시기 및 방법)

- 1 회장은 원칙적으로 임기 만료 년도의 2월 이사회에서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회장은 본회의 대표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2 회장의 후보 등록은 이사 00인 이상의 공개 추천을 받아, 선출일 7일 전까지로 한다.
- 3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현 회장은 투표일 15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은 투표권을 갖지 아니한다.
- 4 후보 등록 이후 경선 과정에서 단독 후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에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며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만일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획득하지 못 할 경우에는 당일 이사회에서 적절한 절차에 의한 재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 5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시점에서 회장 유고시에는 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선출한다. 이 경우, 재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 6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임기)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학회 업무를 통괄하고 임기는 선출연도의 3월 1일을 기점으로 2년 단임으로 한다. 단, 제11조 5항의 사유로 재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해 중임을 허용한다.
- 2 부회장은 맡은 바 직무에 따라 회장을 보좌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 유고 시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 3 상임이사는 학회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4 이사는 의결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5 감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6 모든 임원은 대학원생으로 구성된다. 휴학, 졸업, 자퇴 등의 사유로 대학원생의 지위를 잃는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차기 임원을 재선출한다. 이 경우, 차기 임원의 임기는 새로이 2년으로 한다.

제5장 회의

- 제13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원칙적으로 2월에 연다. 단 회의는 출석 인원으로 성립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4조(정관 개정 및 안건의 결의) 이 정관의 개정은 총회의 결의를 요하며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안건 결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한다.

제6장 회계

제15조 본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기금으로 충당한다.

- 1 입회금 및 회비
- 2 학회 운영에 따른 기금
- 3 제반 연구 및 학술활동 조성금
- 4 찬조금
- 5 기타

제16조 본회의 예산, 결산은 감사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7장 부칙

제18조 이 정관에 필요한 시행 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19조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은 학회 운영상의 관례에 따른다.

제20조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 '국제 대학원생 트랜스-동아시아연구회' 대표의 명의 및 주소지 등은 회장 교체와 동시에 회장의 명의 및 주소지 등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정관의 발효)

1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의 결의를 요하며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본회칙은 창립 총회에서 인준된 일자로부터 발효한다.